

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20060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200606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합52031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강석민

피고, 항소인합병된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경호, 김영빈

변론 종결2021. 10. 14.

판결 선고2021. 11. 11.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합52031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7. 1. 19. 체결된 양도계약을 221,377,48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21,377,4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소송의 수계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T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2021. 3. 5. 그 합병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를 흡수합병한 위 주식회사 B가 피고의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편의상 위 회사들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0행의 "④ C는" 부분을 "⑤ C는"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행의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양도한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C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C의 사업 정상화 내지 그 사업의 계속 추진 등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함과 아울러, C의 여러 채권자들 중에서 피고만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하여 피고의 채권을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아야 할 보호가치가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도 않는 사정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한편, 피고가 이 법원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판결이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을 제8 내지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

라.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7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분을 "을 제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는 C 및 I와 3자간 합의에 따라 I로부터 261,516,035원을 수령함과 아울러, C가 원고에게 221,377,485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C로부터 제공받았는데, 위와 같은 원고와 C 사이의 행위(이하 '쟁점 행위'라 한다)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쟁점 행위를 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쟁점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쟁점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라고 할 것인 점, ② 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등이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인 수익자도 그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점(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5907 판결 등 참조)과 함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피고가 C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동기와 그 과정,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경위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의 주장 내용 등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과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한편,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피고의 2021. 11. 4.자 참고서면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판사채동수

판사박혜선

판사임영우

별지